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소영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6859
----------	------

발의년월일 : 2023.11.17.

발 의 의 원 : 박소영, 권기훈,
김재용, 김재우,
김지만, 김태우,
류종우, 박우근,
박종필, 육정미,
이동욱, 이재화,
임인환, 하병문,
허시영 의원(15명)

1. 개정 이유

현재 불법광고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외벽에 표시된 상호 및 동수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및 창의적인 광고물 제작을 위한 규제 개선, 불법광고물 합동 점검 근거 마련,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옥외 광고물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공동주택 등의 벽면이용간판을 간판의 총 수량에서 제외하고 벽면이용 간판 세부 표시방법 마련(안 제2조·제5조)
- 나. 광고물 바탕색 관련 규제 삭제(안 제3조·제12조)
- 다.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불법광고물 합동점검 운영 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 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기간 관련 규정 정비(안 제22조)
- 마.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내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심의 근거 마련
(안 제23조)
- 바. 타법 개정에 따른 법령명 정비(안 별표 5)

3. 참고 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나.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표시”라”를 ““표시등”이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에”를 “제1호에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관할 자치구”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구·군이 설치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안내를 위해 건물별로 설치하는 자기건물의 주명칭, 동 번호, 상징형 도안에 대해 각각 1개(구·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4조제3항제2호·제4항제1호에 따라 시장이 대구광역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 심의위원회”라고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고시하여”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영 제14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로,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5조”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하려 경우에는 제20조”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경우에는 외벽에 주명칭, 동 번호, 상징형 도안을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가. 주명칭은 세로 2.4미터 이내,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3분의 2 이내

나. 동 번호, 상징형 도안은 세로 2.0미터 이내,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2분의 1 이내

다. 도료·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직접 표시 또는 입체형으로 표시

라.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여야 하며, 빛의 점멸이나 동영상은 사용할 수 없음.

마.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

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
· 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영 제15조제3호 나목”을 “영 제15조제3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제36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 5호 중 “영 제15조제6호 나목3)·다목”을 “영 제15조제6호나목3)·다목”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중 “제1호”를 “시장이 제1호”로, “시장이 시 심의위원회”를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한 제22조의 대구광역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주변 또는 건물”을 “건축물 등 주변의 경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제4조2항”을 “제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불법광고물 합동점검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불법광고물 합동 점검을 위해 불법광고물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합동점검 및 기동정비반의 운영을 위해 영 제39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불법광고물 합동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조의2의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위원”을 “시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심의위원회”를 “시 심의위원회”로, “15일(소위원회는 10일)”을 “20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위원회”를 각각 “시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심의위원회”를 “시 심의위원회”로, “표시·설치와”를 “표시등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항”을 “같은 조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심의위원회”를 “시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심의위원회의”를 “시 심의위원회의”로, “심의위원회 위원장 이”를 “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심의위원회”를 “시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7항 중 “위원회의 심의·의결의”를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해”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9항) 중 “심의위원회”를 각각 “시

심의위원회”로 한다.

⑨ 제2항에 따른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시 심의위원회의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제23조의 제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을“(시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심의위원회”를 각각 “시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에서 제6항 중 “심의위원회”를 “시 심의위원회”로 한다.

3. 법 제3조의2 및 제4조의4에 따른 자유표시구역의 기본계획에 따라 표시등을 하는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제5호는 이 조례 시행 후 표시등을 하는 벽면이용 간판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5]

표시방법의 강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장(제20조제3항 관련)

구 분	시설의 종류
산업· 교통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및 대규모점포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 - 「항만법」에 따른 항만 -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 -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 도로법령에 따라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휴게소(대형승합차 10대이상의 부설 주차장을 갖춘 관광휴게시설에 한함)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관광· 휴양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 「온천법」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간시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모 1만㎡ 이상의 공원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건축물, 사적지, 명승지 등 관광명소 -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관광시설 - 개별법에 따른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마을 -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공공· 공용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도서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등)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제1종 박물관 및 미술관 - 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 대사관, 영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법인묘지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 -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 성당, 교회, 순교기념지로써 당해시설물이 500㎡이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체육시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주택법」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1. ~ 7. (생략)

<신설>

제3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일반적 표시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2. (생략)

3.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

3. (현행과 같음)

② -----

-----.

1. ~ 7. (현행과 같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안내를 위해 건물별로 설치하는 자기건물의 주명칭, 동 번호, 상징형 도안에 대해 각각 1개 (구·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

-----.

1.·2. (현행과 같음)

<삭제>

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경우에는 외벽에 주명칭, 동 번호, 상징형도안을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가. 주명칭은 세로 2.4미터 이내,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3분의 2 이내

나. 동 번호, 상징형 도안은 세로 2.0미터 이내,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2분의 1 이내

다. 도료·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직접 표시 또는 입체형으로 표시

라.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여야 하며, 빛의 점멸이나 동영상은 사용할 수 없음.

마.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

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② ~ ⑥ (생략)

제9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5조제3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5층 이상이어야 한다.

②·③ (생략)

④ 간판의 윗부분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영 제15조제11호에 따른 블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그 밖의 표시방법은 영 제15조제6호 나목3)·다목, 같은

고 다른 방법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5조제3호나목-----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제36조-----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4. (현행과 같음)
5. ----- 영 제15조제6호나목3)·다목-----

조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10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
법) ① (생략)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물
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
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간판의 표시장소·
규격·색깔 등의 세부적인 표
시기준은 제1호부터 제3호까
지 규정된 범위에서 도로교통
의 안전·주변 미관 및 표시
하는 업소 등의 수 등을 고려
하여 시장이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따
른다.

③·④ (생략)

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현수막의 일반적
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라야 한다.

- 1.·2. (생략)
3.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
류의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

--.

제10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
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

시장이 제1호-----

-----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한 제22조의 대구광역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 심의위원회”라 한다)-----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

-----.

- 1.·2. (현행과 같음)
3. ----- 건축물 등 주변의 경
관-----

제2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3. (생략)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제39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불법광고물 합동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조의2의 지원계획에 포함되어 수립할 수 있다.

제2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 시 심의위원회의 위원-----

-----.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 심의위원회-----

20일 -----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
-----.

③ 시 심의위원회-----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영 제32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생략)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생략)

⑦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

-.

④ 시 심의위원회----- 표시
등과 -----

-----.

⑤ ----- 같은 조 제10
항-----
-----.

1. ----- 시 심의위원회
-----.

2. (현행과 같음)

3. ----- 시 심의위원회-
----- 시 심의위원회 위
원장이 -----.

4. ----- 시 심
의위원회-----
-----.

⑥ (현행과 같음)

⑦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에 대해 -----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생략)

<신설>

⑨ 심의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전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2항에 따른 시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시 심의회의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심의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⑩ 시 심의회-----

----- 시 심의회-----

----- 시 심의회-----
----- 시 심의회 -----
-----.

제23조(시 심의회의 심의사항 등) ① -----
시 심의회-----

-----.

1. -----
----- 시 심의회-----

2. (생략)

<신설>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생략)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현행과 같음)

3. 법 제3조의2 및 제4조의4에 따른 자유표시구역의 기본계획에 따라 표시등을 하는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② -----

-----.

1. 시 심의위원회-----

2. (현행과 같음)

③ ----- 시 심의위원회 -----

-----.

④ 시 심의위원회 -----

-----.

⑤ -----
시 심의위원회 -----
----- 시 심의위원회의 -----
-----.

⑥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경관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⑥ 시 심의위원회-----

-----.

관 계 법 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① ~ ③ (생략)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옥외광고사업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 옥외광고사업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⑨ (생략)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①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군·자치구에 각각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③ (생략)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 ⑥ (생략)

⑦ 시·도지사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한 광고물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8항 및 제9항에서 같다)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⑧·⑨ (생략)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시·도지사와 시장등의 합동점검 절차)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합동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점검의 필요성
2. 점검 대상 지역
3. 점검 시기·방법 등
4. 점검 인력·장비·물품 등 점검에 필요한 시장등과의 협력사항
5.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

하이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임대형기숙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

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